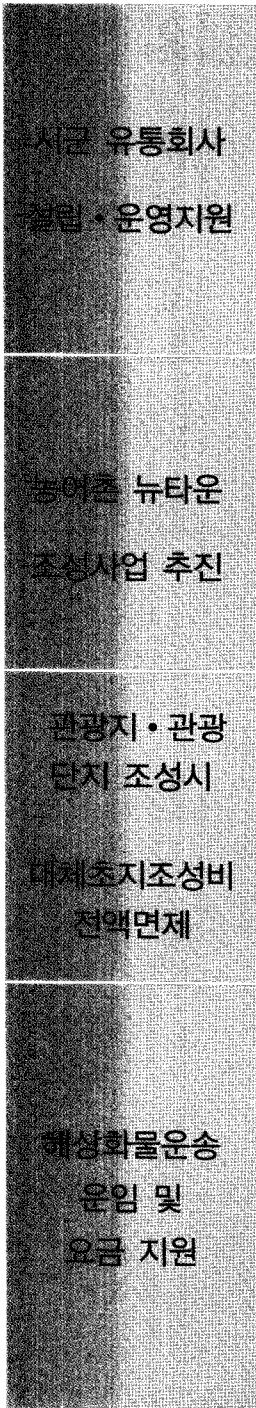


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 시책

○...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'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 시책'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. ...○

〈신·구 대비표〉



| | | |
|---|--|---|
| <p>○ '09 신규사업</p> | <p>○ 농산물 산지에 규모화·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지원</p> <p>○ 법인설립, 농가 조직화, 브랜드 개발·홍보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3년간 총 20억원 지원 (보조 100%) *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</p> | <p>농업·농촌및 식품산업 기본법 ('09.1.1) 농림수산 식품부 유통정책팀 (02-500-1986)</p> |
| <p>○ '09 신규사업</p> | <p>○ 젊은 농어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</p> <p>○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복지, 영농기술교육 및 지원을 연계, 종합지원</p> <p>○ 2011년까지 5개 시·군에 대해 시범실시후 2012년부터 본사업 추진</p> | <p>농업·농촌및 식품산업 기본법 ('09.1.1) 농림수산 식품부 (02-500-1800)</p> |
| <p>○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시 대체초지조성비 전액면제</p> <p>100분의 50 감면</p> | <p>○ 관광지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 전액면제</p> | <p>초지법 시행규칙 ('09.5.21) 농림수산 식품부 자원순환팀 (02-500-2096~7)</p> |
| <p>○ 신 설</p> | <p>○ 농림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 지원</p> | <p>농림어업인삶의 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(공포후 6월) 농림수산 식품부 농촌정책과 (02-500-1789)</p> |

◎ 유통회사 설립 · 운영지원 사업 추진

(농림부 유통정책팀 02-500-1986)

-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산지에 규모화 · 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.
- 시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 · 시군 등의 출자를 통한 다양한 자본구조, 전문 CEO에 의한 책임경영, 기존 조직과의 효율적 역할분담 등을 통해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이다.
- 농수협,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 산지유통조직과 연계를 통해 규모화하여 대형유통업체 등과 직거래 비율을 높임으로써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.
-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'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,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.
- 정부에서는 시군 유통회사에 법인설립, 농가 조직화, 브랜드 개발 · 홍보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3년간 총 20억원 지원(보조 100%)하고, 원물확보에 필요한 자금은 "산지유통활성화사업"을 통해서 용자로 지원할 계획이다.

〈시군 유통회사 지원사업 주요내용〉

- 자격요건
 - 법인형태 :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형 농업회사 법인
 - 생산자(농어업인, 영농 · 영어조합법인) 및 시군이 각각 총 자본금의 1/4이상 출자하고, 설립초기 현금 자본금이 30억원 이상
 - CEO는 농림수산식품부 "농업 CEO 인재풀"에서 선임토록 의무화
- 지원내용
 - 운영자금(보조 100%) : 3년간 총 20억원 이내(매년 6.6억원 수준)
 - 원물확보 자금(용자 80%, 자부담 20%) : 70억원 이내 지원
 - 사업추진 및 신청절차
 - 설립타당성검토(시군) → 설립추진단 구성(시군) →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(설립추진단 → 시군 → 시도 → 농림수산식품부) → 선정평가(농수산물유통공사) → 사업대상자 선정(농림수산식품부)
 - '10년 사업신청
 - 예비신청서 제출('09.2월말), 모집공고('09.6월), 신청서 제출('09.8월말)

◎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

(농림부 농촌지역개발과 02-500-1800)

- 도시의 30~40대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된다.
- 젊은 인력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,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기술교육 및 지원 등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한다
- 젊은 인력 확보를 통하여 고령·영세 농어업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살 맛 나는 농어촌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우선,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5개 시·군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고, 본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
- 사업신청한 14개 시·군('08.12)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범지구를 선정하고, 2011년까지 입주목표를 기반기반시설 및 건축공사가 진행된다.
- 지역여건에 따라 50~300세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,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춘 30~40대 및 창업후계농업인, 농수산물 가공·유통 종사 농어업인이다.

〈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주요내용〉

- 지원대상 및 사업시행주체
 - 시장·군수('09년도 시범사업 5개지구)
- 지원내용
 -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 - 기반시설 조성비 : 보조 100% (국고 70%, 지방비 30%)
 - 임대주택 건축비 : 보조 40%, 용자 60%(연리 3%, 10년거치 20년상환)
 - 분양주택 건축비 : 용자 100% (연리 3%, 3년 단기상환)
 - 영농어 기술 및 자금지원,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등은 기존사업비에서 연계, 종합 지원
- 사업추진절차
 - 사업공모(시·군) → 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(농식품부) → 기본계획 수립(시·군) → 마을정비구역지정(농식품부승인) → 시행계획수립(시·도지사승인) → 사업시행(시·군) → 준공확정(시·도지사) → 분양 및 유지관리(시·군)

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

(농림부 자원순환팀 02-500-209~7)

- '09. 5. 21부터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 될 예정이다.
-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.

양봉

<새 초지법 새행규칙 주요내용>

- 추진배경 :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
- 관광단지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전액면제
- 시행일
* 2009.5.21
- 주요내용
 -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